

‘중소벤처기업부’ - ‘서울특별시’ - ‘네이버주식회사’

광고 후원 협약서

중소벤처기업부(이하 ‘중기부’라 한다), 서울특별시(이하 ‘서울시’라 한다), 네이버 주식회사(이하 ‘네이버’라 한다)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원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‘네이버’가 후원하고 ‘중기부’와 ‘서울시’가 공동협력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익추구·비정치·비영리의 목적) 이 협약의 당사자는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사업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으로 이용되거나 정치, 종교 또는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배제한다.

제3조(후원사항) ① 제로페이의 활성화 위해 ‘네이버’가 후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 협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.

1. 후원주체 : 네이버주식회사
2. 후원대상 : 제로페이 마케팅
3. 후원시기 : 협약체결 시 ~ 2019. 12월
4. 후원내용 : 네이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지원(네이버 광고 지면을 통한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 홍보 지원)

※ 상기 지원 내용은 협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② ‘네이버’는 이 협약이 체결 된 이후 제로페이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후원업무를 수행하되 구체적인 내용, 진행방식 등은 ‘중기부’ 및 ‘서울시’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.



- 제4조(후원내용의 표시 및 후원사 혜택)** ① ‘중기부’와 ‘서울시’는 이 협약과 관련된 제로페이 공식문서, 보도자료 등에 ‘네이버’가 후원한다는 내용을 표시한다.
- ② ‘네이버’가 제1항에 따른 후원사실의 표시방법, 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‘중기부’와 ‘서울시’는 ‘네이버’와 협의하여 내용 및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반영한다.
- ③ ‘중기부’와 ‘서울시’는 ‘네이버’가 요청하는 경우 ‘네이버’의 후원사실을 표시한 증서 등을 ‘네이버’에 제공한다.

제5조(유효기간)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서에 날인하여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제3조에 따른 후원의 종료일까지로 한다.

제6조(협약의 해지) ①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당사자는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.

1. ‘중기부’, ‘서울시’ 및 ‘네이버’가 해지에 합의 한 경우
 2. 이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 3.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약 당사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 4. 제로페이 사업이 취소, 폐지, 연기 되는 경우
 5. 기타 협약 당사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협약의 당사자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협약의 해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7조(기타사항) ① 이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신의·성실을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.

② 이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이 협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‘중기부’, ‘서울시’ 및 ‘네이버’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하며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법령, 상관습에 따라 결정한다.



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3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협약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3월 28일

중소벤처기업부 (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)

장 관 홍종학



서울특별시 (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)

시 장 박원순



네이버주식회사 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)

대표이사 한성숙

